

세계지방자치동향



자치행정

- (한국) 지방의원 의정비 실태와 문제점
- (일본) 요코하마시의 코로나19 대책과 재난 커뮤니케이션

지방재정

- (미국) 미네소타 트윈시티 대도시권 (Twin Cities metropolitan area)의 지방세 공동세원(Tax-base sharing) 프로그램

지방의원 의정비 실태와 문제점

1) 제도적 문제점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

-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는 “의정비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
-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게 함으로써 최종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위임하고 있음
- 집행부의 장인 단체장의 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의 최종권한을 갖게 됨으로써 의정비 결정에 단체장의 실질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어 견제와 균형 원리를 침해할 수 있음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말까지 다음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금액을 결정하므로 의정비의 예측성을 도와시하고 있음
- 금액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여론심의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음

지역적 편차에 의한 의정비 격차 문제

-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수준별, 지역별 의정비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편차는 월정수당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현재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의 성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의정비 현실화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비 수준의 지역적 격차를 살펴보면 서울시의원은 6,438만원, 경기도의원 6,402만원, 서울 강남구의원은 5,044만원 등 광역의원 간 차이뿐만 아니라 광역의원과 기초

의원 사이에서도 불균형 초래

- 세종시 광역의원들의 의정비는 전국 시·도의원 평균 5,837만원에 훨씬 밑도는 연 5,197만원으로, 광역의원 중 최하위이자 서울·경기 지역 등 다수의 기초의원 보다 적음
- 현행제도를 계속 운용할 경우 의정비의 과소여부를 떠나 수도권 의원과 비수도권 의원간의 의정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의정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면적과 도서 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2) 운영상의 문제점

겸직제도의 모호성 문제

- 현재 원칙적으로 지방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정비 현실화와 관련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의무화하는 원칙적 겸직금지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겸직금지의 여부, 범위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겸직금지 규정과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의정비와 보수 개념과의 연계성 미흡

-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액”을 의미함(공무원보수규정 제3 조)
 - 특정 직위와 계급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성격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보장형 기본급여인 봉급과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인 수당으로 구성됨
- 현행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의 의정비는 보수체계 상에 규정되어 있는 생계보장형 기본급여와 부가급여형 수당과 명확히 대응되지 못함
- 지방자치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보전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용어 내용 측면에서 의정비가 ‘생계보장형 기본급여’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음

의정비의 현실화 문제

- 의정비의 비현실화로 인해 지방의원의 비위행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역시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음
- 현재의 의정비 제도 하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며, 의원 역시 생활 인으로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데 의정비 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다른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국회의원의 경우 유급 보좌관을 채용할 수 있으나 광역이나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유급보좌관의 채용을 사비를 들여 채용해야 함. 의정활동비로 광역의회 의원이 기초의회의원보다 100만원 더 받는데 이는 유급보좌관을 채용할 경우 거의 차별화 되지 못하는 결과

경비항목의 제약

- 행정안전부에서는 의정활동비 안에 통신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 지급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의회비는 12가지¹⁾ 경비 외에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통신비·교통비 등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
- 의정활동의 질적 측면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활동비용이나 교통비 등을 별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임

1)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 교육),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의원정책개발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